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98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14.3)의 후속조치 시행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감면사실 사전 안내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 적용대상의 조문 명확화 및 적용대상 확대
(안 제3조)

창업자를 규정하는 조문을 명확화 하고 사업계획승인 적용대상에 공장등록을 한 창업자도 포함

나.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의 부담금 감면사항 안내 (안 제5조)

공장설립 승인 신청자 및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 면제사항을 안내하는 규정 신설

다. 사업계획의 일부승인 조문 명확화 (안 제15조)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하고 일부승인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사항의 허가등이 불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일부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도록 명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예규 : ‘의제처리 되는 민원의 경우 주된 민원 외에 의제대상 민원 중 불가사항이 있을 경우 주된 민원도 불가’

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요건 정비 (안 제18조)

시행령으로 포함된 지침 제18조(변경승인) 제1항을 삭제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관련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

마. 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기간 현실화 (안 제24조)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지침적용기간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지목변경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변경

바. 기타 (안 제7조, 제18조의2, 별지 제1의3호)

타법 조항변경에 따른 반영 및 ‘12.9월 개정시 누락된 별지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의견제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4462, Fax : 042-481-3972)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 -----,
1.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적합한 창업자	1. 법 제2조제2호의 창업자
2. 삭 제	<삭 제>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삭 제>
4.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인 · 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신청자가 법상의 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창업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인 · 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 ----- -----,
<신 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9조

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 민원전담부서) ① 창업사업 계획 및 공장설립사업계획, 공동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및 사후관리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된 창업민원전담부서(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은 시·군·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생략)

제15조(일부승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부승인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은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_____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일부만을
승인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사항을
명기하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한 허가등이 불가한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예규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일부 승인도 취소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변경 승인) 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기 전에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에 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장의 건축착공신고를 한 부지를 제3조의 적용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창업자가 인수한 경우
2.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사업분류표상의 세분류 업종의 변경
3.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해당 법률이 정한 변경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4.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

제18조(변경 승인) <삭 제>

인 시 의제처리 된 일·허가 사항
중 해당 법률이 정한 변경허가대
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은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의 변경(「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된 인허가 사항 중 개별법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의2(변경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사업계획승인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

----- 개별 법률 -----
-----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 -----

1. (현행과 같음)

2. -----

<p>계정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24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등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u>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시점까지로 한다.</u></p> <p>② (생략)</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반기별 창업민원실 운영상황(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시·도 중소기업창업 민원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지사는 관내 시·군·구 창업민원 실의 운영상황을 취합하여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u>중소기업청장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p>	<p><u>항-----</u> ----- -----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① ----- ----- ----- ----- <u>지목변경이 완료되는</u> -----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u>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u> -----</p>
--	--

〈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연 락 처	(042) 481 - 4462